
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행정자치위원회 이승미 위원

- 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,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이승미 의원입니다.
- ☐ 저는 오늘, 본 의원이 발의하고 28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☐ 먼저,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.
- ☐ 현행 조례 제13조는 서울시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에 대해서도
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작성하고,
이첩기관의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- ☐ 이는 서울시가 타 기관의 사무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
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

- 원칙적으로 이첩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제보를 조사·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, 이러한 강행규정을 완화하고 소관 기관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.
- 또한, 피신고자가 이첩 대상 부서와 직접 관련된 경우, 제보자의 신원이 피제보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신고 내용의 비밀 보장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첫째,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 ‘보상금’의 산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.
- 둘째, 서울시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의견 첨부 의무, 공익제보 중 ‘기각’ 건에 대한 월별 시장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.
- 셋째, 제보자의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,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특정부서를 따로 정해 이첩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☐ 넷째, 안심번호사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를 명문화하였습니다.
- 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- ☐ 이번 개정안이 공익제보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, 서울시의 공익제보 처리체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
- ☐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